

NEWSLETTER 801

Mar 15, 2023

통합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합공고』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하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료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II. 주요 개정 내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등록이 면제되는 사유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추가

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하는 수산 동물에 양서류를 포함
-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하는 사유에서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와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삭제
- 수입할 수 없는 수산생물의 범위에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을 추가

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던 관련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인체세포 등(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률 절차 변경

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의 종류 및 요건을 규정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의 범위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서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로 변경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III. 시행일자

- 2023.03.13.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제한은 2023년1월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년7월1일부터 시행
-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봄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통합공고 개정고시안 본문 전문\(제2023-043호\)](#)

[\[붙임 2\] \(개정\) \(별표2\) 수입요령](#)

[\[붙임 3\] \(개정\) \[별표1\] 수출요령](#)

[\[붙임 4\] \(개정\)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붙임 5\] \(개정\) \[별표14의5\]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붙임 6\] \(개정\) \[별표18\] 고압가스수입요령](#)

[\[붙임 7\] \(개정\) \[별표2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목록](#)

[\[붙임 8\] \[별표10\]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

[\[붙임 9\]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붙임 10\] \[별표12\] 예치금 부담금 산출기준](#)

[\[붙임 11\] \[별표12의1\] 환경성보장제도 적용제품 수입업자의 의무](#)

[\[붙임 12\] \[별표13\] 특정화학물질](#)

[\[붙임 13\] \[별표13의2\] 생물작용제 및 독소](#)

[\[붙임 14\] \[별표14의1\]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강희선 팀장

T 070-4353-4019
E hskang@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